

보다 안전한 미래
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

(우)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(수서동, 로즈데일오피스텔 1828호)

www.assi.or.kr E-Mail : assi1307@naver.com 담당 : 박용복 국장 Tel 02-567-1307/ Fax 02-567-1337

문서번호 시험 2020 - 170호

시행일자 2020. 3. 23.

수 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참 조 안전기획실장

선			지	
결			시	
접	일자		결	
	시간		재	
수	번호		공	
처	리	과	람	
담	당	자		

제 목 「주택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」 개정 요청

1. 국가시설물의 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공사에 경의를 표합니다.
2.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(이하 ‘점검용역’)을 시행함에 있어 현재 「건설기술진흥법(이하 ‘건진법’)」과 「시행령」,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」은 나와 있으나 가칭 「정기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자인 귀 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「주택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(이하 ‘평가기준’, 2020.03)」을 만들어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.
3.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존 법령과 지침에 반하오니 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‘평가기준’ [붙임] 1. PQ평가기준의 가.(1) 사업책임기술자 (가) 자격에 「건진법 시행령」 [별표1]의 기준에 건축구조기술사 보유만 독점적으로 ‘2점’으로

하고, 그 외의 「건진법」 기준 특급기술자는 ‘0점’으로 한 것은, ① 전항에 건축구조, 건축시공 전문분야를 인정하고서 건축시공분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모순이며, ② 이미 특급기술자 안에 건축구조기술사가 포함되어 있는 국토교통부의 「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고시 제2019-1017호, 2019.12.31.)」 과 「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(고시 제163호, 2019.4.10.)」 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는 다른 입찰용역 평가기준에는 없는 특혜로 삭제하거나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것임.

나. ‘평가기준’ [붙임] 1. PQ평가기준의 다.신용도 (1) 점검·진단평가기준은 다른 법인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‘시설물 안전법’)」 상의 용역 관련사항으로 본 점검용역의 부실과는 해당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해야 할 것임.

다. 위 PQ평가기준의 마. 가점 (1) 참여업체 구조설계 실적은 설계실적으로서 「시설물 안전법」 상 ‘정밀안전진단’ 용역의 실적과 같이 ‘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’ 실적과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삭제해야 할 것임.

붙임 : (1) 「LH공사 건설주택공사 정기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」
검토서 1부. 끝.

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

